

중소기업 CEO의 고민

중소기업 CEO라면 누구나 **우수한 인재를 채용**하여 그들이 **회사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** 원할 것입니다.

그러나 회사의 형편상 당장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면?



핵심인력 플랜 _ 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로열티 제고

핵심인재에게 최소 2년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

주식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**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**하는 제도입니다.

주식매수선택권 실무 프로세스

현재 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
-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-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
-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- ③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변경등기
- ④ 핵심인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작성

□ 2년 뒤_ 주식매수선택권 행사

- ① 행사가능시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행사
- ②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 부여 방법 1) <u>신주발행</u> 2) <u>자기주식 양도</u> 3) 행사가액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(Stock grant)
- ③ 행사이익은 (행사시점 시가 행사가) 핵심인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, 단 벤처기업의 경우 2023년 이후 행사분부터 2억원(누적 5억원)까지 비과세

핵심인력 플랜 _ 2) 핵심인재 리스크 관리

핵심인재 부재시 회사와 직원의 유가족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



핵심인재를 피보험자로 법인계약 체결

보험사고 발생시

- 수익자인 법인이 보험금 수령 후
-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핵심직원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

핵심인재 퇴직시

- 계약자 변경 통해 퇴직금 재원의 일부로 처리 (해지환급금)
- 계약자 변경 거부시 회사는 해약 처리함 (보험차손 비용처리)

법인명의 보험 가입시 계약관계







복리후생규정에 따라